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 9. 12 선고 2021가단3838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

## 전 문

**원고**A조합(변경전 상호 B조합)

소송대리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종복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연증, 정용찬

**피고**D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환, 곽용석

**변론 종결**2023. 8. 29.

**판결 선고**2023. 9. 12.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포항시 남구 E 답 119m<sup>2</sup> 및 포항시 남구 F 답 283m<sup>2</sup>에 대한 청구는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주위적: 피고와 소외 G 사이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18. 1. 16.자 증여계약은

89,532,251원의 한도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9,532,2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피고는 소외 G((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기부상 주소: 포항시 남구 H)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와 2018. 1. 17. 접수 제3793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원고의 소외 G에 대한 기존 대출거래 내역

원고는 소외 G에게 2010. 3. 9.부터 2017. 2. 24.까지 총 6회에 걸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총 27억 3,000만 원을 대출하였다(이하 '기존 대출금'이라 한다).

|       |               |             |             |            |
|-------|---------------|-------------|-------------|------------|
| 1     | 2010.03.09.   | 2018.02.09. | 200,000,000 | I 소유 토지    |
| 2     | 2010.12.02.   | 2018.12.02. | 500,000,000 | J 소유 토지    |
| 3     | 2013.02.20.   | 2018.02.20. | 700,000,000 | G, K 소유 토지 |
| 4     | 2013.03.21.   | 2018.03.21. | 980,000,000 |            |
| 5     | 2015.07.30.   | 2018.07.30. | 300,000,000 |            |
| 6     | 2017.02.24.   | 2020.02.24. | 50,000,000  |            |
| 합계(원) | 2,730,000,000 |             |             |            |

#### 나. 1번 대출금에 대하여

- (1) 1번 대출금에 대하여 원고는 2010. 3. 8. I 소유의 포항시 남구 L, M, N, O, P, Q(2016. 5. 31. 위 6필지가 모두 M로 합병됨, 이하 통칭하여 'I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대출하였으나 2016. 10. 13.자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2016. 10. 19.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 (2) 한편 원고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2016. 10. 19. I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원고로 한 최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최초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2016. 10. 19.자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추가설정계약이라 되어 있는데 위 날짜에 원고가 G에게 추가로 대출한 내역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I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9. 일부포기로 말소한 3건의 근저당권(각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160,000,000원, 230,000,000원)에 관하여 같은 날 모두 같은 채권최고액, 같은 채권자 및 같은 채무자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마친 점에 미루어 신규 근저당권은 모두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I 소유의 부동산의 2009. 12. 24.자 한국부동산원 외부감정평가에 의한 시가는 791,000,000원이다.

#### **다. 2번 대출금에 대하여**

(1) 2번 대출금에 대하여 원고는 2010. 12. 2. J 소유의 포항시 남구 R, S(2011. 6. 14. 포항시로 기부채납되면서 위 번지에 관한 근저당권이 일부 해지, 말소되었다), T, U(2016. 3. 14. 그 중 1㎡가 분할되어 V으로 이기되었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각 대출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13. 2. 20. J 소유의 부동산 중 포항시 남구 R 답 1754㎡에 관하여 근저당권일부포기를 이유로 근저당권을 해지, 말소하여 위 2번 대출금에 대한 담보는 J 소유 부동산 중 포항시 남구 T, U만 남게 되었다.

(3) J 소유의 부동산 중 포항시 남구 T, U, V (2016. 3. 14. U에서 1㎡가 분할, 이하 통칭하여 'J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2018. 2. 13.자 간이감정에 따른 시가는 939,010,000원이다.

#### **라. 3번 내지 6번 대출금에 대하여**

3번 내지 6번 대출금에 대하여 원고는 G 소유의 포항시 남구 W 답 754㎡(2018. 6. 18. 합병으로 X에 이기후 등기부 폐쇄), Y 답 37㎡(2018. 7. 10. Z에게 매도), AA 답 1590㎡(2018. 6. 18. 합병으로 X에 이기후 등기부 폐쇄), AB 답 200㎡(2018. 7. 10. Z에게 매도), X 답 343㎡(합병으로 인하여 위 W답 754㎡, AA 답 1590㎡를 병합한 후 2018. 7. 5. 분할로 답 1967㎡를 AC에

이기하고 답 720m<sup>2</sup>만 남게 되었다), AD 답 51m<sup>2</sup>(2018. 7. 10. Z에게 매도) 등 6필지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외 K 소유의 위 AE 답 729m<sup>2</sup>, AF 답 8m<sup>2</sup>, AG 답 1399m<sup>2</sup>(2018. 7. 5. 분할로 347m'를 AH에 이기), AI 답 250m<sup>2</sup>, AJ 답 45m<sup>2</sup>, AK 답 422m<sup>2</sup>, AL 답 134m<sup>2</sup>, AM 답 1700m<sup>2</sup>, AN 답 176m<sup>2</sup> 등 9필지 합계 15필지를 공동담보물로 하여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라 한다). 그 내역은 별지1 기재와 같다.

#### 마. 2018. 1. 22.자 추가 대출 4억 원의 대출과정

(1) 원고는 2018. 1. 4. 소외 G으로부터 4억 원의 추가대출신청을 받고 이의 여신심사절차를 위해 (주)AO 대구경북지사에 이 사건 담보 부동산을 공동담보물로 하여 감정가치 평가 의뢰를 결정하였다1). 그 내역은 별지1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2018. 1. 11. G을 면담하여 개인여신심사표를 작성하고 실제 여신심사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18. 1. 17. 위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서를 송부받았는데, 이 사건 담보물(15필지 면적 합계 7,838m<sup>2</sup>)의 시장가액은 합계 3,456,950,000원으로 평가되었다.

(3) 원고는 감정평가서를 받은 직후인 2018. 1. 18. 담보권등기 확보를 위한 절차로서 대출상담 및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2018. 1. 19.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이하 기존 근저당권을 포함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2018. 1. 22. 대출심사위원회의 심의에서 이 사건 담보물의 70%에서 선순위인 기대출잔액 19억 8,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39,865,000원을 대출가능금액으로 산출한 다음 대출승인을 받아 4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 바. G의 피고에 대한 2018. 1. 16.자 증여행위

G은 원고에 대하여 2018. 1. 16. 자 기준 기존 담보대출채무 원금 27억 3,000만 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담보목적 부동산이 아닌 그 자신의 소유지분을 가진 아래 부동산(이하 '이 사건 증여부동산'이라 한다)을 2018. 1. 16.자로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다.

|   |                       |   |      |          |                    |                             |       |
|---|-----------------------|---|------|----------|--------------------|-----------------------------|-------|
| 1 | AR                    | 답 | 2936 | 589/3055 | AU, AV, AW, AX, AY | AZ, BA, BB<br>(2018.05.21.) | 갑 3-1 |
| 2 | E(2020.1.30. AR에서 분할) | 답 | 119  | 갑 14-1   |                    |                             |       |

|   |                          |   |      |          |                       |                             |          |
|---|--------------------------|---|------|----------|-----------------------|-----------------------------|----------|
| 1 | AR                       | 답 | 2936 | 589/3055 | AU, AV, AW, AX,<br>AY | AZ, BA, BB<br>(2018.05.21.) | 갑<br>3-1 |
| 3 | AS                       | 답 | 2675 | 543/2813 | AU 지분 전부 매수           | 갑 3-2                       |          |
| 4 | F(2020.1.30. AS에서<br>분할) | 답 | 283  | 갑 14-2   |                       |                             |          |
| 5 | AT                       | 답 | 2698 | 521/2698 |                       | 갑 3-3                       |          |

- 타 공유자들의 공유지분관계

순번 1,2: AU (590/3055지분), AV(343/3555지분), AW(590/3055지분), AX(589/3055지분),  
AY(354/3055지분)

→ AU 공유지분 (매매) : AZ(236/3055지분), BA(177/3055지분), BB(177/3055지분)

순번 3,4: AU(543/2813지분), AV(316/2813지분), AW(542/2813지분), AX(543/2813지분),  
AY(326/2813지분)

→ AU 공유지분 (매매) : AZ(217/2813지분), BA(163/2813지분), BB(163/2813지분)

순번 5: AU(521/2698지분), AV(303/2698지분), AW(520/2698지분), AX(521/2698지분),  
AY(312/2698지분)

→ AU 공유지분 (매매) : AZ(209/2698지분), BA(156/2698지분), BB(156/2698지분)

- 순번 2,4: 분할 전 AR, AS에서 각 2020. 1. 30.자 분할하여 2020. 2. 5.자로 BC에 모두 합병 됨

- 순번 2, 4: D는 2020. 1. 30.자 분할 후, 같은 날 BD에게 지분 매매

**사. 이 사건 증여 당시(2018. 1. 16.) 소극재산 현황**

(1) 원고의 G에 대한 이 사건 증여 당시 잔존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1     | 2010.03.09.   | 200,000,000   | 200,000,000 | 1,728,219 | 갑 20, '2'쪽 |
| 2     | 2010.12.02.   | 500,000,000   | 500,000,000 | 1,465,068 | 갑 21, '4'쪽 |
| 3     | 2013.02.20.   | 700,000,000   | 700,000,000 | 2,476,849 | 갑 22, '3'쪽 |
| 4     | 2013.03.21.   | 980,000,000   | 980,000,000 | 2,041,084 | 갑 23, '4'쪽 |
| 5     | 2015.07.30.   | 300,000,000   | 300,000,000 | 993,698   | 갑 24, '2'쪽 |
| 6     | 2017.02.24.   | 50,000,000    | 50,000,000  | 213,533   | 갑 25, '1'쪽 |
| 합계(원) | 2,730,000,000 | 2,730,000,000 | 8,918,451   |           |            |

(2) 이 사건 증여일과 가까운 2018. 1. 18. 작성된 고객종합상세정보(자료출처 : BE기관)에 의하면, G은 BF카드 신용카드채무 5,266,000원, BG 신차할부 금융채무 16,540,000원, 주BH의 대표이사로서 BI은행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3,913,750,000원(갑 제37호증)2),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잔존연대보증채무 62,490,000원(갑 제19호증 3쪽에는 은행 2곳에 대한 보증채무 합계 4,930,000,000원, 기타 보증채무가 2개의 기관에 합계 165,543,000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오나 위 BI은행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보증채무 이외의 기관에 대한 보증채무 내역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 채권최고액 합계 270,000,000원 등이 존재(아래 아항, 순번 11, 12, 14, 15 부동산 담보)하는 등 원고에 대한 채무 외에도 합계 4,268,046,000원의 대출채무 및 보증채무가 존재하였다.

아. 이 사건 증여 당시 G의 적극재산 현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포항시 남구청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대법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BI은행 포항영업부, 신용보증기금 포항지점, BI은행 포항공단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BE기관에 대한 신용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증여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AU,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2018. 3. 30.자 근저당권설정당시 소외 G이 2018. 1. 16. 이미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부동산의 각 지분을 증여한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12. 16.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초과하여 부적법하다.

### 나.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 다. 판단

원고가 G이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부동산을 증여한 이후인 2018. 3. 30. 이 사건 증여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AU,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2018. 3. 30. 당시 채무자는 AU였던 점, 따라서 원고의 관심사는 이 사건 증여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채권최고액을 상회하는지 여부였을 뿐, 채무자도 아닌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사실만으로 G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부동산의 각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8. 3. 30. 당시 원고가 G의 사해행위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다만, 원고는 2021. 12. 16.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적어도 소외 G이 2018. 1. 16.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부동산의 각 지분을 증여한 것이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3. 1. 8. 원고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비로소 추가한 2필지인 포항시 남구 E 답 119m<sup>2</sup> 및 F답 283m<sup>2</sup>에 대하여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 3. 본안에 대한 판단

### 가.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앞서 본 기초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인 2018. 1. 16. G에 대하여 총 6건의 대출계약에 관한 잔존 원금채권 27억 3,000만 원, 미수이자채권 8,918,451원 등 합계금 27억 38,918,451원을 가지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증여계약 직전인 2018. 1. 4. G으로부터 기존 대출담보 부동산에

관하여 4억 원의 추가대출신청에 따라 (주)AO 대구경북지사에 그 담보목적물에 대해 감정가치 평가 의뢰한 점, ② 그 직후인 2018. 1. 11. G을 면담하여 개인여신심사표를 작성하고 실제 여신심사절차를 진행한 점, ③ 2018. 1. 17. 위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서를 송부받은 직후인 2018. 1. 18. 선 담보권등기 확보를 위한 절차로서 대출상담 및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 날인 2018. 1. 19. 자로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그 근저당권등기를 마친 점, ④ 2018. 1. 22. 대출심사위원회의 심의에서 대출승인을 받아 이 사건 대출금 4억 원의 대출을 실행한 점 등의 흐름에서 보듯이 은행의 담보대출절차가 대출신청일에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대출신청 및 상담, 담보평가절차, 개인여신심사절차, 담보권 등기절차 등 일련의 연속된 행위를 마치는 날 당해 대출금 실행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식상 이 사건 증여계약일(2018. 1. 16.자)로부터 6일 경과되는 날인 2018. 1. 22. 이 사건 대출금이 실행되었다 하더라도, 그 4억 원의 추가담보채권 성립을 위한 2018. 1. 4. 자 대출상담 및 담보평가절차를 거쳐 2018. 1. 11. 자로 개인여신심사표가 작성되는 등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그 추가담보대출채권이 확정적으로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2018. 1. 22. 자로 그 대출실행이 확정적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4억 원도 채무자인 G의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3) 관련 법리에 따르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다263355 판결).

(4)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법률관계는 대출일인 2018. 1. 22. 성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아무리 빨리 기한을 앞당겨 본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관계의 기초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인 2018. 1. 19.에야 비로소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은 이

사건 증여 당시에 이미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로서는 이 사건 대출금을 반드시 실행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할지 말지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대출하기로 한 것은 원고의 경제적 자유에 의한 선택일 뿐이기 때문에 이를 다른 자유를 희생해가면서까지 법률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더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 나.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의 범위

(1) 관련 법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비록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채무액이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이때 취소채권자가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담보물의 가액에서 취소채권자에 앞서는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변제받을 금액을 먼저 공제한 다음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다263355 판결).

(2) 구체적인 계산 ① 원고는 G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 당시까지 대출계약에 따라 가지고 있는 채권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합계 27억 38,918,451원이다.

② 순번 1번 대출금에 대하여 I 소유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260,000,000원(I 소유의 부동산의 2009. 12. 24.자 한국부동산원 외부감정평가에 의한 시가는 791,000,000원인데 2018. 1. 16.자 기준으로는 위 평가액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1번 대출금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이 최선순위이므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상당액이 모두 담보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다.

③ 순번 2번 대출금에 대하여 J 소유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650,000,000원(J 소유 부동산에 대한 2018. 2. 13.자 간이감정에 따른 시가는 939,010,000원이고, 2018. 1. 16.을 기준으로 담보물의 가액에서 원고에 앞서는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상당액이 모두 담보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다.

④ 순번 3번 내지 6번 대출금에 대하여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채권최고액

총액 25억 7,400만 원(별지1 기준 대출금 순번 1 내지 6번에 대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이다.

⑤ 따라서 원고의 채권액에 대하여 선순위 담보권으로 담보되고 있는 채권액 합계는

3,484,000,000원에 이르러 원고의 채권액을 초과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잔존 대출채권총액 27억 38,918,451원에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는 각종 담보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총액 34억 8,400만 원을 빼면,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다.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G이 이 사건 증여부동산 중 1, 3, 5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대출 편의를 위한 통정허위표시로서 책임재산 보호의무를 위반한 사해행위이므로, 예비적으로 그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는 이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하여 채권에 대한 담보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G의 처분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책임재산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포항시 남구 E 답 119m<sup>2</sup> 및 포항시 남구 F 답 283m<sup>2</sup>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청구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박진숙

별지

1) G 명의의 AC 답 2314m<sup>2</sup>(2018. 6. 12. AP에게 매도), K 명의의 AH 답 347m<sup>2</sup>(2018. 10. 12. 합병으로 AC에 이기후 등기부 폐쇄)는 감정의뢰 되지 아니하였다.

2) 채무자 G은 2013. 5. 15.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금액 14억 8,500만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BI은행에 제출하고 2015. 5. 16. 16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신용보증기금은 위 주채무 미변제로 인한 보증사고를 이유로 2018. 9. 6. BI은행에 보증원금 및 이자조로 15억 4,893,303원을 대위변제 하였는데, 신용보증기금 보증채무 1,485,000,000원은 BI은행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내역에 포함됨.